

서울특별시 화재감정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철성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389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2월 03일

발 의 자: 박철성 의원(1명)

찬 성 자: 김성준, 김영철, 김원태,
김형재, 남창진, 민병주,
박승진, 박유진, 봉양순,
서상열, 서호연, 송도호,
송재혁, 왕정순, 유정인,
유정희, 이상욱, 이상훈,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종태, 임종국, 정준호,
최민규, 홍국표 의원(26
명)

1. 제안이유

- 최근 화재의 양상이 점차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보다 세밀하고 과학적인 화재 원인 분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화재감정연구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화재, 안전사고, 감식, 감정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시장에게 화재감정연구센터의 설치와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 다. 화재감정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감정 업무의 공정성과 비밀 유지를 위한 원칙을 마련함(안 제5조)
- 마. 화재감정연구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화재감정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감정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사. 시장에게 감정자료 통계를 시책에 활용하고 유사한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감정자료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토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화재감정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내에 화재감정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을 말한다.
2. “안전사고”란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의 미비, 안전수칙 위반, 부주의, 시설물의 결함 등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3. “감식”이란 원인의 판정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주로 시각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이란 감정물에 대한 물건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성질 등 이와 관련된 모든 현상에 대하여 과학적 방법에 의한 필요한 실험을 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원인을 밝히는 자료를 얻는 것을 말한다.
5. “감정물”이란 감정의 대상이 되는 증거물과 감정시료를 말한다.

6. “증거물”이란 화재 및 안전사고와 관련 있는 물건 및 개연성이 있는 모든 개체를 말한다.

7. “감정인”은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해 과학적 감정 및 연구를 통해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제4조의 화재감정연구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화재감정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제1항에 따른 화재감정기관인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내에 화재감정연구센터(이하 “감정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감정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 및 안전사고 원인과 성상에 대한 과학적 감정·조사·분석·연구
2. 화재 및 안전사고 현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
3. 화재 및 안전사고 피해저감을 위한 조사·분석·연구
4.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대형화재 등의 현장에 대한 감식 및 감정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감정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감정원칙) ① 감정은 감정인의 양심에 따라 신속·정확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정인은 감정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되는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제6조(화재감정자문단) ① 시장은 감정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화재감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호에 사항을 자문한다.

1. 감정센터 운영 및 감정에 관한 사항
2. 재감정 필요성 여부 등 재감정에 관한 사항
3. 외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의뢰한 감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자문단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7조(감정결과의 공표) 감정결과의 공표는 법 제14조에 따른다.

제8조(통계관리) 시장은 화재 감정 통계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유사한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정자료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화재감정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화재감정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화재감정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소방재난본부)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 2024년도 화재감정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

조항	사업명	예산액(천원)
제4조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화 (붙임1)	296,313

※자료: 2024 서울시 예산서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계분석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붙임 1] 2024년 서울시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화 사업설명서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4.01 ~ 2024.12.
- 사업내용
 - 미보유장비, 노후장비, 증거물 감정센터 운영장비 구입
 - 화재조사관 현장 안전을 위한 호흡 및 피부 보호장비 구입
 - 화재감식, 분석에 필요한 물품 및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운영 물품 구입
 - 화재조사 업무담당자 발골복 구입 및 화재(안전사고)조사 전문 인력풀 운영
 -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을 위한 평가 및 장비 검·교정
- '24년 사업비 : 296,313천원

□ 2024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96,313	
화재조사장비 보강	2024.01~2024.06	88,100	노후장비 교체 및 법정 미보유장비 구입
화재조사 감식 및 감정 운영물품 구입	2024.01~2024.10	26,573	화재조사감식 및 재현실험 소모품 구입
화재조사업무 담당자 발골복 구입	2024.04~2024.11	32,000	화재조사업무 담당자 발골복 구입
화재조사업무 담당자 호흡 및 피부 보호장비 구입	2024.03~2024.08	80,960	화재조사업무 담당자 보호장비 구입
화재피해복구재활센터 운영	2024.01~2024.11	14,300	화재피해복구 지원 운영물품 구입
화재 증거물 감정센터 및 화재조사 시험분석 연구실 운영	2024.01~2024.12	20,000	화재 증거물 감정센터, 화재조사 시험분석 연구실 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화재 및 안전사고조사 인력POOL 운영	2024.01~2024.12	6,000	화재 및 안전사고조사 전문위원 인력풀 운영
화재조사 연찬대회 및 컨퍼런스	2024.09~2024.11	5,000	화재조사 연찬대회 및 컨퍼런스 운영
화재통계연보 발간	2024.05~2024.08	5,000	화재통계연보 발간
화재조사 우수연구논문집 발간	2024.04~2024.06	3,900	화재조사 우수연구논문집 발간
화재조사관 등급제 운영	2024.04~2024.12	2,000	인증 심사, 패치 및 기념품 제작
재난 및 안전사고분석보고 인포그래픽 제작	2024.01~2024.12	1,680	재난 및 안전사고 분석 전망(게시용)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KOLAS 인정 추진	2024.01~2024.12	10,800	KOLAS 내부 심사 및 장비 검·교정